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

2024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국제감축사업 참여자 역할	4
제3장. 국제감축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제4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9
제6장. 투자지원사업	20
제7장. 구매사업	24
제8장. 보 칙	25
부 칙	27



별표



[별표 1의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8
[별표 1의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투자지원사업)	29
[별표 2] 제재등급 분류표	30
[별표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31
[별표 4의1]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34
[별표 4의2]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	36
[별표 5의1] 최종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38
[별표 5의2] 최종평가 기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39
[별표 5의3] 최종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	40
[별표 6]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41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43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5
[별지 제2호] 비밀준수 서약서	46
[별지 제3호] 청렴 서약서	47
[별지 제4호의 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48
[별지 제4호의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투자지원사업)	60
[별지 제5호의 1] 국제감축사업 선정 평가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80
[별지 제5호의 2] 국제감축사업 선정 평가표 (투자지원사업)	82
[별지 제6호의 1] 업무협약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84
[별지 제6호의 2] 업무협약 (투자지원사업)	96
[별지 제7호] 서약서	109
[별지 제8호의 1]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10
[별지 제8호의 2]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투자지원사업)	112
[별지 제8호의 3] 관리계좌 확인서	115
[별지 제9호의 1] 중간보고서 양식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16
[별지 제9호의 2] 중간보고서 양식 (투자지원사업)	121
[별지 제10호의 1] 최종보고서 양식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25
[별지 제10호의 2] 최종보고서 양식 (투자지원사업)	130
[별지 제11호의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34
[별지 제11호의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투자지원사업)	139
[별지 제12호의 1] 착수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44
[별지 제12호의 2] 착수신고서 (투자지원사업)	145
[별지 제13호의 1] 완료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46
[별지 제13호의 2] 준공신고서 (투자지원사업)	147
[별지 제14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48
[별지 제15호] 사업 포기각서	151
[별지 제16호] 실시상황 보고서	152
[별지 제17호] 사고 보고서	153

[별지 제18호의 1] 최종평가서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54
[별지 제18호의 2] 최종평가서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55
[별지 제18호의 3] 최종평가서 (투자지원사업)	156
[별지 제19호] 이의신청서	158
[별지 제20호]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159
[별지 제21호]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160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

2024. 7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란 영 제 38조 제1항 및 제74조제12항 1부터 4, 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2. “국제감축사업”이란 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말하며,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구매 사업을 포함한다.
3. “국내기업 등”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을 의미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4. “신청기업”이라 함은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국내기업 등을 말한다.
5. “지원기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국내기업 등을 말한다.
6. “주관기업”이란 2개 이상의 신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보고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2개 이상의 신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선정된 경우,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수행책임자”란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로 국제감축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9. “신청사업”이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10. “타당성조사”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기초 현황, 법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설계,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 국제감축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전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최적의 사업추진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재무·법률 등 세부적인 조사

1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하며, 예비 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1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설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3.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공모사업”이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비공모 사업”이란 정부 간 합의 또는 합의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타당성조사·설치 수행·지원 또는 검토중인 사업이거나 특정한 신청기업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여 국제감축사업의 내용과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협력체계 구축”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 양자협정 체결, 이행 세부규칙 협의 등을 말한다.
17. “사업비”란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총 비용을 말한다.
18. “타당성조사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관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추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19. “투자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투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장관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0.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21. “정산”이란 정부지원금 신청서 제출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2. “설치 확인”이란 투자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조사결과 확인”이란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이 수행한 타당성조사가 정부지원금 교부 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취득설비”란 투자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25. “조사결과”란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보고서, 연구결과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6.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정부지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필요항목, 사업비 사용계획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시 결정된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조사를 수행
 - 나. 투자지원사업 : 설비의 종류, 규격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시 결정된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설치
 27. “국제감축실적”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으로서, 지원기업이 투자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취득한 것과 정부가 구매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8. “모니터링”이란 지원기업이 투자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9. “인증유효기간”이란 국제감축실적 발급이 가능한 기간으로 지원기업이 투자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다.
 30. “상응조정”이란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참여 당사국이 동일한 수량을 조정(+/-)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응조정 세부 방식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고시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교통, 건물, 건설 등 국토교통분야 및 기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라 지정한 비율에 따르며, 지원범위는 제15조, 제36조, 제46조에 따른다. 단, 위탁·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방식 및 조건, 신청자격 등 지원범위를 달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원칙) ① 국제감축사업 업무처리에 관하여 국제감축사업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의 유사 내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면책) 국제감축사업 담당 직원은 업무 시 국제감축사업 관련법규와 내규에 맞도록 취급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제2장 국제감축사업 참여자 역할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국제감축사업 정책현안 및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국제감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선정, 최종평가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제감축사업의 선정 결과, 협약 체결, 변경, 정지 및 해약, 최종 평가 결과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5.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6. 정부지원금의 집행·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7.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 국제감축사업의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8. 기 추진한 투자지원/구매 국제감축사업의 후속 추진 관리 및 감축실적 확보·감축목표 활용 기여
9. 국제감축사업 신규사업의 개발 및 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연계, 기업 교육
10.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
11.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12.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3.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14.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5.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6.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업) ① 지원기업은 단일 국내기업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기업으로 구성할 경우 지원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2. 지원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 업무
3. 지원사업 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실적보고
4. 지원사업 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지원사업 중간 및 최종 결과의 보고
6.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과의 보고·활용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7. 투자지원사업 성과의 보고·활용 및 국제감축실적의 확보·보고
8. 지원사업의 보안관리 및 윤리준수
9. 부정 행위 등 문제 발생시 전담기관에 보고
10. 기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수행책임자) ①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는 지원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작성
2. 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정산
4. 사업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제출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수행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원사업과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등)
3. 기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보안유지 의무) ① 본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전담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등
2. 국제감축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4. 그 외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국제감축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장 국제감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국제감축 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정책현안 및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국제감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정책 및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3.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4. 본 사업 담당 중앙행정공무원
5.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제감축사업 담당부서의 국장이 된다. 다만, 협의회 일정에 국장이 부재할 경우, 담당부서 과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감측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운영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안전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의회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전담기관에서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협의회 안전 및 근거 자료 등을 협의회 참석 위원에게 제공 및 설명하여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측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일시·장소·논의내용,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의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임차료, 수당, 여비 등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시행 중인 동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외부장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측사업의 선정, 최종결과 평가 및 기타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아래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외부위원은 전체 구성위원의 그 중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정책 및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3.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4. 본 사업 담당 중앙행정공무원
5.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6. 전담기관 소속 임직원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비 평가,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검토·평가·선정(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2.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검토·선정
3.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정부지원금 환수·관리(예산배정 등) 및 환수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감축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은 3배수 이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시행 중인 동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13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외부위원 구성 명단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계획서/제안서 등을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보안 유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자료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심의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심의 안건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심의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⑥ 간사는 전담기관에서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사전 검토 내용, 심의기준 및 자료 등을 출석위원에게 제공 및 설명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⑧ 심의안건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14조(심의위원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참석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제15조(지원범위)** ① 타당성조사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사업공고에서 지정한 비율에 따르며, 지원 범위는 경비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회의비, 외주용역비 등으로 한다[별표 3 참조]. 단,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전담기관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범위를 달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의 장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민간부담금으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제16조(선정방식) ①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사업 :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사업
2. 비공모사업 : 국내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정부간 협의 또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나.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타당성조사·설치를 수행·지원하였거나, 검토 중인 사업

다. 신청기업의 장이 신청한 사업 중 그 신청기업이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감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파리협정 제6조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공고할 수 있고, 특정 부문 및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부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본방향

나. 국제감축사업의 범위 및 추진 일정

다. 지원대상사업(사업유형)

라. 지원사업 대상기업 및 응모방법(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마. 지원 및 선정 절차

바.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전담기관의 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국제감축사업을 상시 공고하거나 접수 받을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의 시급성 및 신청서의 접수율 저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은 국토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 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공모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및 신청기업에 국제감축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신청 안내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모사업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0조에 따라 비공모사업을 평가하고, 전담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따른다.

제17조(사업의 신청) ①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마감 일시 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추진 경위, 기초조사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
5. 신청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정보
6.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7. 국토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당성조사사업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동의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은 공고 안내사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접수·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국내기업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국제감축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폐업 중인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 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도 이와 같다)

6. 제30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7.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9.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0. 기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사업신청서 사전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사전검토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에게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업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신청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신청한 사업 내용 및 업체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별지 제5호의1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한다. 심의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총액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신청사업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격, 6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감축사업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해 조정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고득점 순위에 따라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업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결과 조정·확정 후 [별지 제6호의1 서식]으로 지원기업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서/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 협약조건을 만족하는 차 순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거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2. 지원기업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 (지원기업이 복수인 경우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서 첨부)
3.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 등 협약 내용 변경 요청시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또한, 변경 승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사업내용 및 지역·위치 등 사업수행에 중대한 변경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사업내용 및 지역·위치 등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사업추진계획,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보고 결과의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기업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지 또는 해약에 관한 사항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국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지원금의 집행 중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국제감축사업과 지원기업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전담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금 전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제27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8호의1 서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금 반환 의무의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계좌로 사업비를 청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전담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이 지침 제25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등을 준용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설치 확인을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국제감축사업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감축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획득한 감축설비 및 조사결과를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이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지원금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정부지원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부지원금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지원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1항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 및 전담기관의 요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장에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4일 이내에 소명·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정부지원금 정산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소명·보완을 거친 후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액을 환수하여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의 장에게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1 서식] 착수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 ⑤ 현장점검에 관한 일정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⑧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2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사업을 수행하는 타당성평가 지원사업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0호의1 서식]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본 사업 추진 가능성
 6.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인 또는 협의 결과
 7.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10부(원본1부, 사본9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1 서식] 신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9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점수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은 “성공”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사업은 “실패”
3. 최종평가지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전담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진행 불가시 “평가불가”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24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전담기관이 회수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하여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26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라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2. 제29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3. 제56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보고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사업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본 조의 제재 및 환수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이의 신청) ① 제26조제6항, 제29조제5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는 지원기업의 장(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9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환수금) ①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대상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를 받은 지원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결과의 확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최종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 조사결과로 확정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국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국문, 영문 및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번역의 오류 및 거짓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 및 환경 현황 자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관리, 감독 등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시 지원사업 선정 및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효과 제고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지원사업

제36조(지원범위) ① 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으로써, 사업의 법적·경제적 타당성 및 확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업에 한한다.

② 투자지원 정부지원금의 지원범위는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7조(선정방식) 투자지원사업의 선정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사업신청서 평가, 지원기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의 신청) ① 투자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 개요, 추진 경위, 사업대상국 확인서, 인허가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5. 신청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정보
6.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② 각 신청기업의 장은 제1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마감 일시 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은 공고 안내사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접수·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자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의 사업일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자격 등) 투자지원사업의 신청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협약의 중지 및 해약에 대해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70%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제27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의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과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을 서면 확인 후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금 반환 의무의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계좌로 사업비를 청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전담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설치 확인을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등) 투자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의 진도관리에 대해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지원사업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6.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10부(원본1부, 사본9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3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등) 투자지원사업의 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환수금에 대해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성과물의 귀속) ① 투자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실적은 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정, 약정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업과 전담기관간에 분배 한다. 전담기관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 총량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 및 [별표 6]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위한 취소 및 수익금 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를 고려한다.

2.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가 가능한 사업 중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의 국내분배량이 전담기관 분배량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지원기업은 해당 기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에게 보상한다. 단,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취득설비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분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45조(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① 투자지원사업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설비 설치가 완료(종료)된 후 협약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축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제23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중단 및 해제시에는 이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성과 등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사업

제46조(지원범위사업) 구매사업의 대상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한다.

제47조(선정방식) ① 구매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쟁입찰계약에 따라 선정된 지원기업으로부터 특정량의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구매사업의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하되 공고시 연도별 구매물량, 구매방식, 구매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신청자격 등) 구매사업의 신청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에 대해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구매사업 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구매사업의 연도별 구매량 및 구매가격을 최종 확정 후 주관기업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구매사업 수행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보완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와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계약서를 전담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구매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마지막 국제감축실적 구매량이 이전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수행자와의 협약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협약의 변경 등) 구매사업의 협약의 변경, 협약의 중지 및 해약에 대해 제5장 타

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및 구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1조(구매대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구매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약서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사업의 국제감축실적이 지원기업의 국제감축사업등록부에서 전담기관의 국제감축사업등록부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구매대금은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의 총량에 협약서 상의 전담기관 구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협약 이후의 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성과, 연도별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현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의 장에게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서 상의 해당 연도 구매물량 대비 실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의 양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약서 상의 구매물량과 실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의 물량 간 차이의 10%에 협약서 상의 전담기관 구매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징수

제53조(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등) 구매사업의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환수금에 대해 제5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54조(사업정보의 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별 사업의 정보 및 평가결과
2. 위원의 정보
3. 사업의 성과

4. 기타 국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사업의 보안)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행책임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사업 수행관련 정보·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제56조(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 지원기업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7조(관련법령 등의 준수) ①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고일 당시 대한민국 및 국제감축사업 수행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지원기업은 대표자 및 고용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협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58조(양도의 금지)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국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59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국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발행을 위한 사업등록, 모니터링, 검인증 절차는 정부간 협의에 따른 절차 및 양식을 적용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24.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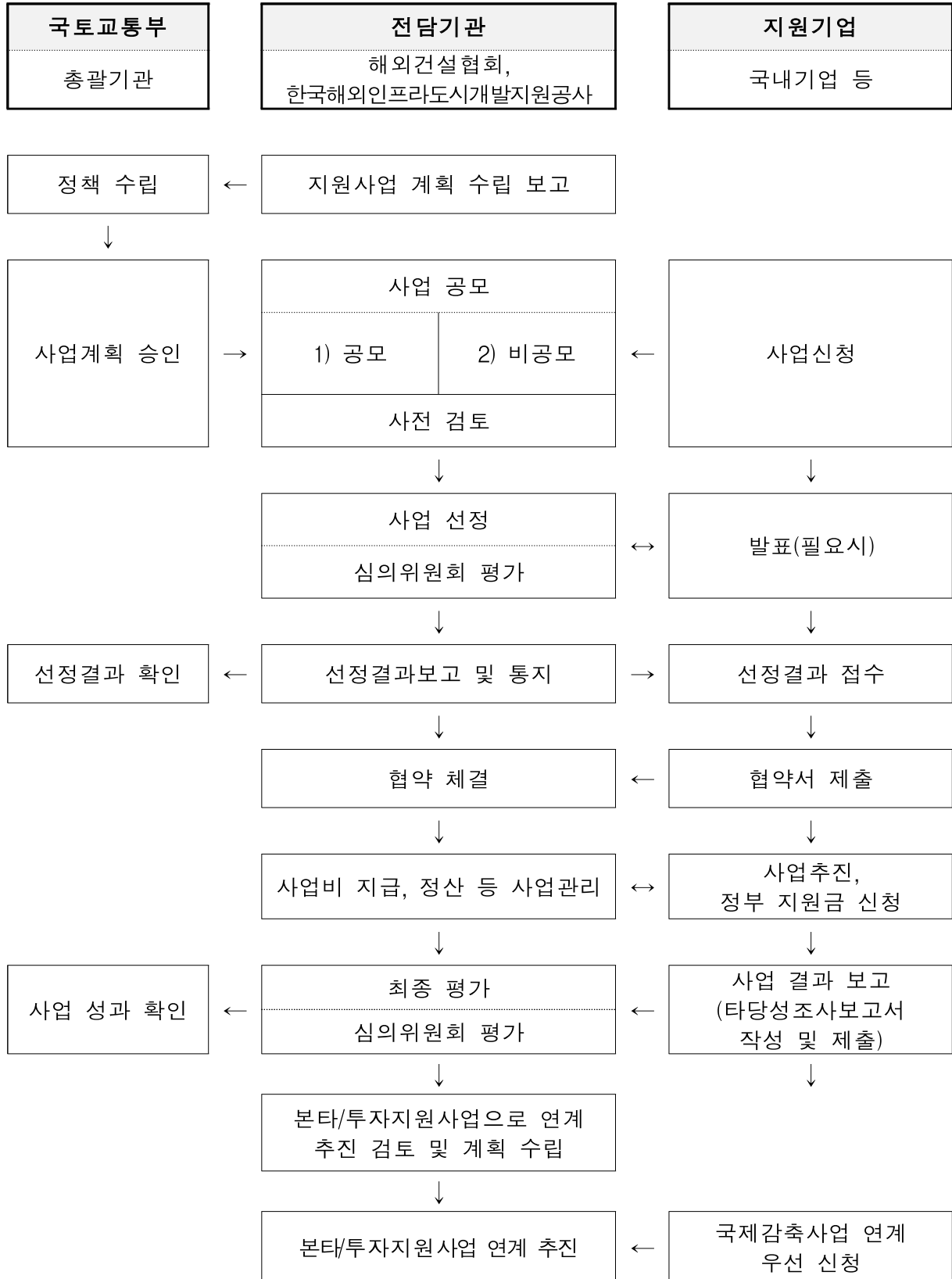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五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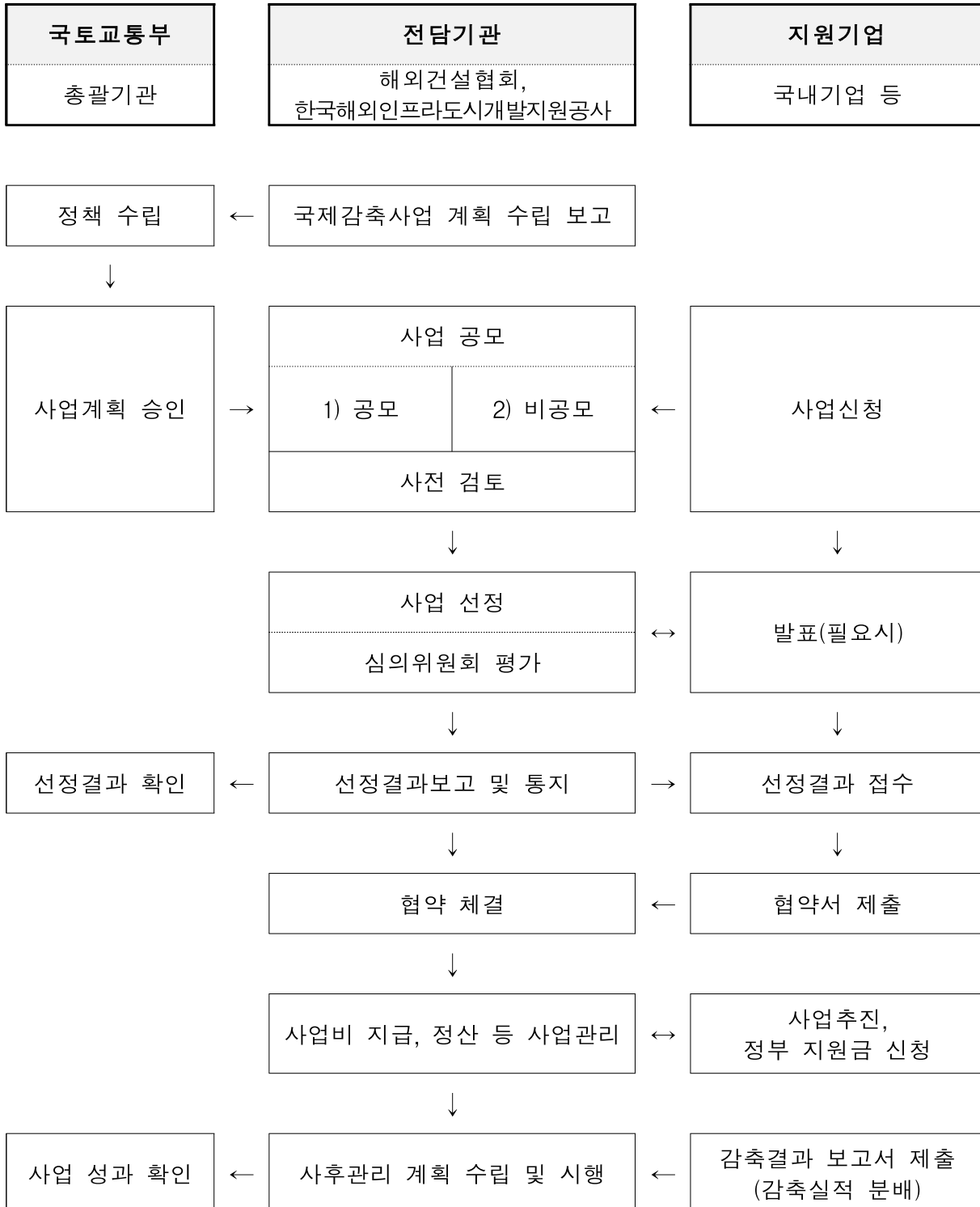


[별표 1의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절차



[별표 1의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절차



[별표 2] 제재등급 분류표

제재등급 분류표

1.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정부지원금 지급이후 (협약기간)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된 감축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 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공 통	○ 운영기관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 서약을 위반한 경우	

2.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 정부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국제감축사업이 취소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업체가 감축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정부지원금의 50% 환수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 서약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부 지원금액 환수
	○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환수

[별표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기준

I. 일반원칙

- 사업비는 경비로 구성하며 이를 비목이라 하고,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경비 비목 내의 일반수용비·국내여비·국외여비·위탁용역사업비 등을 세목이라 한다.
- 지원기업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금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보안각서 포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증빙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금전등록영수증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 수행책임자는 사업계획 상의 정부지원금 산출내역에 준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타기관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조사개발사업 참여율 100%을 초과할 수 없음

II. 정산 공통사항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변경 시 승인 결재서류), 정부지원금 집행명세서·비목별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서·비목 변경 승인서류·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정 범위
 - 사업 계획서상의 예산과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한 경우
 - 정부지원금 비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해석 오류 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불인정 범위

-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 개인 또는 기관 경비
- 자산가치가 있는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Ⅲ. 정부지원금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경 비	일반 수용비	인쇄, 복사, 유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안내, 홍보물 제작 [증빙] 계약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통번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번역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증빙] 계약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수령확인증)
		자문료, 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초청 자문료 ○ 보고회 등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증빙] 자문일시·장소·목적·내용·전문가서명 자문의견서, 결의서(계좌이체내역, 수령확인증)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경비	공공 요금	통신비, 수수료 등	○ 송금수수료, 택배비, 보증증권,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우편요금, 전화요금, 국외출장시 로밍요금 등 [증빙]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임차료	임차료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특수 실험 실습 기구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 ○ 공청회, 세미나, 포럼, 보고회 등 회의장 사용 [증빙] 견적서, 계약서,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회의비	회의비	○ 다과회 물품(음료, 다과 등) 구입, 회의비용 및 오찬, 만찬비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도에 따름 [증빙] 일시·장소·목적·내용·참석자 서명 회의록, 결의서(영수증)
	위탁 용역 사업비	외주 용역비	○ 사업계획서에 사유서 제출 (외주용역 필요성, 외주기업의 일반사항, 외주기업의 관련 수행경험, 참여인력의 경력 또는 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정산 시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증빙] 계약서, 결과보고서,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확인서)
	국내 여비	국내 출장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국내여비 ○ 출장자(참여인력)에게 참여기간에 한해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 따름 ○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철도, 선박) 1) 자가용 출장 시 사업 수행상 불가피(산간오지, 도서벽지 등)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연료비, 통행료 영수증 첨부한 경우, 유사 구간 철도/버스운임으로 지급 2) 회의비로 식비 사용한 경우, 출장여비의 해당 식비 감액 3) 택시, 시내버스, 전철 요금 제외 4)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할 경우 일비의 50% 감액 [증빙] 출장복명서(목적, 출장자, 기간, 출장지), 결의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국외 여비	국외 출장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국외여비 ○ 출장자(참여인력)에게 참여기간에 한해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4 제5호]에 따름 ○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운임, 차량 임차 1) 비자발급 등 행정비용, 여행자보험, 장비대상 보험, 예방접종비 등 산정 지급 2) 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 관련 공무원 초청여비 산정 3) 차량, 와이파이 에그 등 산정 지급 4) 통역비는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산정·집행 5)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할 경우 일비의 50% 감액 [증빙] 출장복명서(목적, 출장자, 기간, 출장지), 결의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부가가치세			○ 당해 지원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업 수행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 부가세법 제4조 제1호 (주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 = 경비×부가세율(10%)

[별표 4의1]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정량평가 (신청기업 적정성)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신청기업 적정성 (30점) *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항목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사업비 배분비율에 따라 산정	(1) 해외사업 수행 실적 (5점)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		4		3		2		1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증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5점)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		4		3		2		1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증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3) 수행책임자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경험 (10점)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10		8		6		4		2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수행책임자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증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신용 평가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10	8	6	4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 [증빙] 공고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10점)	○ 기본협정 체결 및 가서명 여부 (10점) (사업선정 공고문 공고일 기준)									
	체결		가서명		없음					
	10		6		2					
※ 한국-대상국 간의 기본협정 체결이나 가서명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국의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8점을 배점함										

□ **정성평가**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사업화 가능성 (40점)	(1) 지원기업 사업추진 역량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사업수행 경험, 사업관리 역량, 위기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업의 사업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2) 사업 추진 가능성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①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②ITMO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③사업대상국 의향서 및 인허가 확보 여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				
	(3) 타당성조사 계획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타당성조사 계획의 필요성, 적정성, 구체성, 명확성 등 평가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평가					
(4)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제시된 사업계획의 명확성, 정보의 수준,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실현 가능성을 판단					
기대효과 (20점)	(1) 온실가스 감축효과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연간 10만톤 감축이상(10), 연간 7만톤 감축이상(8), 연간 5만톤 감축 이상(6), 연간 3만톤 감축이상(4), 연간 3만톤 감축 미만(2)				
	(2) 지속가능발전기여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지속가능발전기여 항목 5개 이상(10), 4개 이상(8), 3개 이상(6), 2개 이상(4), 1개 이상(2)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별표 4의2]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정성 (30점)	(1)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5건 이상</td> <td style="width: 20%;">3건 이상</td> <td style="width: 20%;">2건 이상</td> <td style="width: 20%;">1건 이상</td> <td style="width: 20%;">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	4	3	2	1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	4	3	2	1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중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A등급</th> <th style="width: 15%;">B등급</th> <th style="width: 15%;">C등급</th> <th style="width: 15%;">D등급</th> <th style="width: 15%;">E등급</th>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용 평가 등급</td> <td>회 사 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B- 이상</td> <td>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0 이상</td> <td>B-</td> <td>C 이하</td> </tr> <tr> <td>기업신용평가</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B- 이상</td> <td>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r> <tr> <td>등급별 배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10	8	6	4	2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10	8	6	4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 [중빙] 공고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																																
(3)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4건 이상</td> <td style="width: 20%;">3건 이상</td> <td style="width: 20%;">2건 이상</td> <td style="width: 20%;">1건 이상</td> <td style="width: 20%;">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	4	3	2	1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	4	3	2	1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4)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여부 (1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중앙정부), 인허가 (토지사용, 사업권, 운영권 등)</td> <td style="width: 30%;">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 (중앙 또는 지방정부)</td> <td style="width: 10%;">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중앙정부), 인허가 (토지사용, 사업권, 운영권 등)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 (중앙 또는 지방정부)	없음	10	5	1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중앙정부), 인허가 (토지사용, 사업권, 운영권 등)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 (중앙 또는 지방정부)	없음																														
10	5	1																														
(5)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 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활용 명시 (파리협정 제6조 활용)</td> <td style="width: 20%;">유보</td> <td style="width: 20%;">미활용/ 언급 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활용 명시 (파리협정 제6조 활용)	유보	미활용/ 언급 없음	5	3	1																										
활용 명시 (파리협정 제6조 활용)	유보	미활용/ 언급 없음																														
5	3	1																														
사업화 가능성 (30점)	(1) 사업추진 단계 (1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인허가 및 설계 완료</td> <td style="width: 20%;">사업권 확보</td> <td style="width: 20%;">구속력 있는 협약체결</td> <td style="width: 20%;">구속력 없는 협약체결</td> <td style="width: 20%;">대상국 정부에서 사업제안 요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인허가 및 설계 완료	사업권 확보	구속력 있는 협약체결	구속력 없는 협약체결	대상국 정부에서 사업제안 요청	10	8	6	4	2																					
	인허가 및 설계 완료	사업권 확보	구속력 있는 협약체결	구속력 없는 협약체결	대상국 정부에서 사업제안 요청																											
	10	8	6	4	2																											
	(2)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금융 약정</td> <td style="width: 20%;">계약서 협의</td> <td style="width: 20%;">투자협약서</td> <td style="width: 20%;">투자의향서</td> <td style="width: 20%;">없음,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금융 약정	계약서 협의	투자협약서	투자의향서	없음, 기타	5	4	3	2	1																					
	금융 약정	계약서 협의	투자협약서	투자의향서	없음, 기타																											
	5	4	3	2	1																											
	정부지원금 외 민간부담금(투자비, 연간 운영비)의 확보를 위한 투자구조 파악																															
	(3)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계약 체결</td> <td style="width: 20%;">조건 협의</td> <td style="width: 20%;">계약당사자 파악</td> <td style="width: 20%;">매출 및 비용 산정</td> <td style="width: 20%;">미흡,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계약 체결	조건 협의	계약당사자 파악	매출 및 비용 산정	미흡, 기타	5	4	3	2	1																						
계약 체결	조건 협의	계약당사자 파악	매출 및 비용 산정	미흡, 기타																												
5	4	3	2	1																												
(4) 적용기술의 적정성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특히, 신기술 등 소유/사용권 확보</td> <td style="width: 20%;">기술사용 협의</td> <td style="width: 20%;">기술소유권자 파악</td> <td style="width: 20%;">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td> <td style="width: 20%;">미흡,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특히, 신기술 등 소유/사용권 확보	기술사용 협의	기술소유권자 파악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미흡, 기타	5	4	3	2	1																						
특히, 신기술 등 소유/사용권 확보	기술사용 협의	기술소유권자 파악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미흡, 기타																												
5	4	3	2	1																												
(5) 국내 및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사업대상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예시)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20점)	(1)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10점)				
	적용 방법론 명확 10	방법론 개정 필요 5	신규 방법론 개발 필요 1		
	(2)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점)				
	측정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감축량 구체적·현실적 산정 5	감축량 산정 및 이론적 근거 개괄적 제시 3	감축량 산정방법 제시, 근거 부족 1		
	(3)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점)				
	모니터링 기간, 지점, 수집할 데이터 목록 등 계획 제시 5	모니터링 기간, 지점, 수집할 데이터 목록 등 일부 불명확 3	계획 미흡 1		
사업의 경제성 (20점)	(1) 톤당 감축비용 (10점)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2) 총 정부지원금의 회수기간 (10점)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별표 5의1] 최종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사업의 경제성, 가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정성 (70점)	(1) 사업의 기초조사 (1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대상국 사업 환경 검토, 현지 유사사업 동향, 법령, 제도 등 정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의 적정성 평가										
(2) 기술적 타당성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적용 기술 (2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방법론 선정·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예상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사용권 확보 검토											
(3) 경제적 타당성 : 설치·운영비 산정 및 민감도 분석 (2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예상 설비비 및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민감도 분석의 적절성 등 검토											
(4) 리스크 분석 (1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국가 정책, 법,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리스크 분석 및 해소방안 수립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점)	(1) 사업 추진의 준비성 (1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사업대상 지역 및 위치, 기술 선정 구체화를 통한 감축사업 모델 도출의 준비성										
(2) 사업비 집행 적정성 (1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집행내역, 실적보고의 적정성 평가											
(3)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지속가능발전기여 항목 5개 이상(5), 4개 이상(4), 3개 이상(3), 2개 이상(2), 1개 이상(1)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정량평가 (가점, 최대 10점, MOU 체결 여부)

평가항목 (가점)	기준
MOU 체결 (+10점)	(1)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5점) (2)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등 포함(+5점)

[별표 5의2] 최종평가 기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사업의 경제성, 가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정성 (70점)	(1) 타당성조사의 적정성 (1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①국가 정책,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 ②법·제도·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리스크 해소방안 ③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평가				
	(2)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진전도 (30점) : 제반사항 추진의 적정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	24	18	12	6
	관련법률, 정책조사	사업부지 측량, 지질·지반조사	국제감축사업 추진 관련 현황 조사 등	온실가스 감축량 전문가 검증	사업권 확보
	인허가 취득	사업비(초기투자비, 운영비) 구체화	재무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세부 리스크 파악 및 회피방안 도출	사업추진구도 (EPC/O&M) 적절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적절성 검증	적용기술 및 공정계획 수립	시설물 배치 및 설비내역 산출	공사 및 설비운영 구체적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간 감축실적 협상
(3)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계획 (2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5	21	17	13	9	
연차별 확보 계획의 명확성, 향후 지속적인 감축실적 확보 가능성 평가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점)	(1) 사업 추진의 준비성 (1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사업대상 지역 및 위치, 기술 선정 구체화를 통한 감축사업 모델 도출, 설치비 및 운영비의 민간부담금 확보 등 투자방안 마련의 준비성				
	(2) 사업비 집행 적정성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집행내역, 실적보고의 적정성 평가				
	(3)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정량평가 (가점, 최대 10점, MOU 체결 또는 사업권 확보 여부)

평가항목 (가점)	기준
MOU 체결 또는 사업권 확보 (+10점)	(1)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5점) (2)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사업권 등 확보(+5점)

[별표 5의3] 최종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정성평가 (사업성과, 노력도, 사후관리)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사업성과 (50점)	(1) 감축설비 설치·운영 적절성 (2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계획 대비 설치·운영의 적절성을 평가				
노력도 (25점)	(2) 목표 달성 정도 (3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	24	18	12	6
	예상 감축량 목표 대비 감축실적 확보 정도를 평가				
사후관리 (25점)	(1) 사업비 집행 적정성 (1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집행내역, 실적보고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25점)	(2) 추진방법 및 과정 적극성 (1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추진 과정 상 문제 및 어려움의 해결 노력도 평가				
사후관리 (25점)	(1) 향후 감축실적 확보 계획 (2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2	9	6	3
	연차별 확보 계획의 명확성, 향후 지속적인 감축실적 확보 가능성 평가				
사후관리 (25점)	(2) 지속가능발전 기여 (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별표 6]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 사업 유형별 정의 및 분배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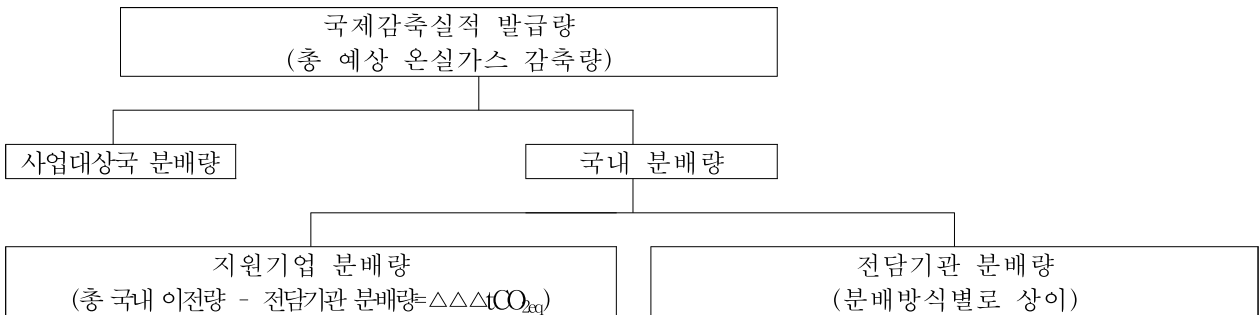
구 분	정의	감축실적 분배 방식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이 외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유형 * 추가 수익 : 전력 판매 수익, 차량 운영에 따른 운임료 수익 등	고정가격 반영 (계약시점)	· 이자가 고려되지 않은 정부지원금 상환액을 계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 실적 고시가격 ¹⁾ 으로 나누어 산정
		고정가격 반영 (발급시점)	· 이자 고려된 정부지원금 상환액 ²⁾ 을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의 국제감축 실적 고시가격 ¹⁾ 으로 나누어 산정
		변동가격 반영 (계약&발급시점)	· 이자가 고려되지 않은 정부지원금 상환액을 계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 실적 고시가격 ¹⁾ 대비 발급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이 30% 이상 편차를 보일 때, 편차의 50%에 해당 하는 가격을 가감하여 분배량 산정 (예시1) 계약시점 가격 10,000원 발급시점 가격 15,000원 편차 +50%(≥±30%) +5,000원 편차의 50% +2,500원 최종 가격 12,500원 (예시2) 계약시점 가격 10,000원 발급시점 가격 5,000원 편차 -50%(≥±30%) -5,000원 편차의 50% -2,500원 최종 가격 7,500원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외 추가수익이 발생 하지 않는 사업	· 국내 분배량에 국내기업 총 사업비 ³⁾ 에서 총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산정	

- 1)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 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 3개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장내거래 가중평균가격(한국거래소 배출권 정보 플랫폼 자료 기준)
- 2) 이자 고려된 정부지원금 상환액 : 총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 금리(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된 금액
- 3) 국내기업 총 사업비 : 국제감축실적 발급기간(10년 혹은 15년 등)동안 운영비, 기타비용(국제 감축사업 등록 및 검인증 비용 등)과 같이 지원기업 부담금과 총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제3자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받은 금액

□ 사업 유형별 분배 시점 및 간격, 기타사항

구 분	감축실적 분배 시점 및 간격, 기타사항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사업	고정가격 반영 (계약시점)	· 인증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년 ⁴⁾ 협약된 국제감축실적 분배방식에 따라 분배 · “국내 분배량 ⁵⁾ <전담기관 분배량”의 경우,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여 전담기관에게 보상*
	고정가격 반영 (발급시점)	
	변동가격 반영 (계약&발급시점)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	· 인증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년 ⁴⁾ 지분율에 따라 분배 · 매년 분배된 배출권의 누적 가치 ⁶⁾ 가 총 정부지원금을 초과해야함	

- 4) 모니터링의 데이터 취합 비용, 검인증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성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발생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분배시점 조정 가능
- 5) 국내 분배량 :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에서 상대국과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 차감한 이후에 지원기업과 전담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향후 발행시점에서 재산정시 고려함

6) 분배된 배출권의 누적 가치 : “분배 시점별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X 분배시점별 분배량”의 총합

* 모니터링 이후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분배량이 전담기관 분배량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이 타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여 전담기관에게 보상한다. 이때 실제 보상량은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단,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구분	필수요건	내 용
발신주체	대상국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성명, 직급, 부서명, 주소	관련 부처 : 환경부, 산업부, 투자무역부, 국토부, 에너지부 등 중앙정부 내 관계 부서 (예시) 환경부 기후변화국
수신처	기업 또는 국토부	기업 : 지원기업 또는 주관-참여기업 컨소시엄 국토부 : 한국 국토부 기후변화정책관
의향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 참여	
사업 설명	사업명 수행기업 사업기간 수행 단계	수행단계 : 타당성조사, 측정 또는 설치 등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제공)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비밀준수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서명)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청렴 서약서

본인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4호의1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접수번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기본 정보 (신청 기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법인등록 번호			
	기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사무소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FAX		
	수행 책임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 락 처				
컨소 시업	기업명		기업구분		업 종	
	수행(주관)					
	(참여1)					
	(참여2)					
신 청 정 보	사 업 명					
	대상국(국명, 지역)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원 <input type="checkbox"/> 본타당성조사(본타) 지원*			
	(예타 지원) 전담기관과 본타당성조사, 투자지원사업 연계 추진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본타 지원) 전담기관과 투자지원사업 연계 추진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타당성조사(FS) 총 신청사업비		백만원		정부지원금	백만원 (%)
			백만원		민간부담금	백만원 (%)
	타당성조사 기간		<i>yyyy.mm~yyyy.mm</i>			
사업 정보	예상 사업기간		<i>yyyy.mm~yyyy.mm</i>			
	예상 초기투자비		백만원			
	연간 예상 운영비		백만원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p>1.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합니다.</p> <p>2. 당사는 타당성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동일 과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 사업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동일 과업에 대해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p> <p>3.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선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 수행(주관)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1)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2) (대표이사 명)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전담기관의 장 귀하</p>						

* 본타 지원사업은 예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전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예타보고서 등 제출 필요
** 연계 추진 미동의를 사업선정 및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신청기업(주관)	
신청기업(참여)	

20 .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요약

사 업 명		분 야		
		신청구분	예타 <input type="checkbox"/>	본타 <input type="checkbox"/>
신청기업				
타당성조사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개월)			

구	분	타당성조사(FS) 총 신청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	액	백만원 (현금)	백만원 (현금)	백만원
비	율	100%	%	%

사업정보*	예상 사업비	백만원	연간 예상 운영비	백만원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감축량 산정 방법론(CDM 등)	

* 동일/유사 사업 유형 및 사업 규모 기준 산정

1. 사업 개요
 -
2. 추진 경과
 -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
4. 신청기업 개요 및 타당성조사 계획
 -
5. 경제성 분석
 -
6.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
7. 지속가능발전 기여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원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구 분	사업자 명	설명
(국내)사업참여자 1		
(국외)사업참여자 2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상 사업참여자 기술(유치국 정부 관계자, 지원기업, 투자자 등)

1.4 사업 추진 일정

업무구분	20 年		20 年				20 年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
1. 예비/본 타당성조사									
2. 설치 등 착공									
3. 시설 운영									
4. . . .									

- 업무구분, 추진 일정의 경우 각 사업별 특성 및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2. 추진경과

2.1 사업 개발 단계 및 경과

- 해당 사업 현재 추진 단계 및 연도별 추진 경과 상세 기술

2.2 사업대상국 중앙/지역 정부와 논의 경과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3.1 사업 대상국가 분석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환경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하 국가감축목표 등 관련 사항 기술
- 해당 국제감축사업 관련 대상국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

3.2 양자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및 계획

- 대상국의 파리협정 양자협력 등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파리협정 하 감축사업추진 가능성 (OECD 국가등급, ODA 중점협력국, 국내기업 사업 추진 여부 등)
- 중앙/지방정부와 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획

4. 신청기업 개요

4.1 신청기업 개요

- 조직도 및 주요사업분야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
- 신청기업의 신용도

5.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계획

5.1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향후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계획

- 국제감축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등의 역할
- 타당성조사시 투입인력 운영 계획(현지 출장 계획 등)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경력사항

가. 타당성조사 수행 조직

구분	기관명	주요 업무
주관기업		.
참여기업 1		.
참여기업 2		.

나. 타당성조사 수행인력

- 수행인력 : 총 00명(실제 참여자 기준)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업 1 : 00명 / 참여기업 2 : 00명

구분	성명	직급	참여율	주요 업무
주관기업				.
				.
				.
				.
				.
참여기업 1				.
				.
				.
참여기업 2				.
				.
				.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5.2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의 경우)

- *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내부 검토문서 포함
-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시 기초사된 항목, 주요 결과, 분석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

5.3 (예비/본)타당성조사 수행 일정

구분	수행내용	세부내용	수행일정(월)												수행기관 및 전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등 수행계획 개요 ■ 본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인허가 관련 추진 일정 자세하게 기입 필요
--

5.4 (예비/본)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 타당성조사항목(기술적/재무적/경제적/법률적/온실가스 감축 등)
- 항목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 위험요소 분석 및 향후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추진 계획
- 위탁용역 활용계획(외주용역업체 개요, 수행계획 등)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 파일 첨부)

6. 경제성 분석

6.1 예상 사업비

- 감축설비 설계 및 설치를 위한 투자비

6.2 연간 예상 운영비

- 행정비,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6.3 경제성 분석 결과

- 사업비, 운영비, 연간 수익(국제감축실적, 추가 수익 등) 고려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사업 투자 구조

※ 자료 불충분으로 경제성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사업 및 규모의 경제성분석 토대 제시 필요

6.4 소요자금 조달 계획

- 사업비, 운영비 등 소요자금 조달 계획

7.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7.1 방법론

- CDM 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시 활용 방법론 설명(사업경계, 적용조건/적용불가조건 등)
- 해당 방법론 선정 기준, 유사 방법론 비교 등

7.2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활용된 데이터(계수, 모니터링 인자 등)에 대한 근거 제출 필요
- ※ 자료 불충분으로 감축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사업 및 규모의 감축량 토대 추정값 제시 필요
- ※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고, 세부자료 별첨 가능

8.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사업이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번호	항목	확인 사항	해당여부 (O/x)	설명
1	정책일관성	사업이 해당 분야, 기술, 지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과 부합하는지 여부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여부		
3	오염 제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수질오염(BOD, COD, pH 등)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		
		전자폐기물, 냉매 등 폐기물 발생 여부		
		소음 및 진동 수준 증가 여부		
		지반침하 유발 여부		
4	안전 보건	지역사회와 사업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		
5	환경 및 생물다양성	사업 지역이 국내법,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인지 여부		
		지역사회의 토지이용과 국내법, 국제 조약,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멸종위기종의 보호 지역 여부		
		외래종 유입 여부		
		자연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음, 진동, 수질, 미세먼지, 배기가스, 폐기물 등)		
6	경제	지표수, 지하수, 심층 지하수 사용 여부		
		현지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	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사업의 지역사회 갈등 유발 여부		
		지역 공동체 의견과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포함 여부		
8	기술	지역사회의 노동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기술 이전,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역량배양 활동 포함 여부		
		설명서, 매뉴얼, 현장 대응 방안 등과 같은 기술 정보 제공 여부 및 운영상 문제점 해소방안 제공 여부(영어 및 현지어)		
		건설, 시공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 계획 여부		

9. 사업자 정보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전화	
담당자 이메일	

■ 사업자 세부사항(조직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표 형태로 작성 제시

10.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10.1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5년)	자가평가	5건 이상	득점	5
----------------------	------	-------	----	---

순번	국가명	사업명	지원기관	추진현황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사업비 (백만원)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서 등

10.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최근5년)	자가평가	5건 이상	득점	5
-------------------------------------	------	-------	----	---

순번	국가명	사업명	구분	지원기관	추진현황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사업비 (백만원)
00	000000	00000사업	예비타당성조사	000000	0000-00-00	0000-00-00	00
00	000000	00000사업	본타당성조사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00	000000	00000사업	실시설계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서 등

10.3 수행책임자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최근5년)	자가평가	5건 이상	득점	10
---	------	-------	----	----

순번	국가명	사업명	구분	지원기관	추진현황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사업비 (백만원)
00	000000	00000사업	예비타당성조사	000000	0000-00-00	0000-00-00	00
00	000000	00000사업	본타당성조사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00	000000	00000사업	실시설계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서 등

10.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자가평가	B	득점	10
------------------	------	---	----	----

구분	기업명	평가 등급	평가구분	평가기관	유효기간 (년월일)까지	사업비 배분액 (백만원)	배분비율 (%)
주관	000000	BB-	회사채	0000	0000-00-00	00000	00.0
참여1	000000	A-	기업신용평가	0000	0000-00-00	00000	00.0
참여2	000000	BBB	기업신용평가	0000	0000-00-00	00000	00.0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배분비율을 고려한 최종 평가등급 적용

* [스캔본 첨부] 평가서 등

10.5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 여부

년월일	발신처	발신자	파리협정 제6조	인허가 사항
0000-00-00	000부 000국	(이름/직책)	(여/부)	000내 토지사용권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10.6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순번	국가명	사업형태	주요사업 및 추진사업수(건)	비고
00	000000	(6.2 / 6.4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00	000000	(6.2 / 6.4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 [근거서류 첨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10.7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발표년도	목표년도	달성목표		파리협정 제6조 활용 언급여부	비고
		조건부	무조건		
0000	0000	0000대비 00%	0000대비 000톤	(여/부)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1.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타당성조사(FS) 총 신청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백만원 (현금)	백만원 (현금)	백만원
100%	%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등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경비	소계			
	여비	계		
	소계			
	유인물비, 자문료, 통·번역비 임차료 등	계		
	소계			
	위탁 용역사업비	계		
합 계				

*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1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등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해당 증빙자료 파일명 작성)

순번	구분	비고	주관 기업	참여 기업1
1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
2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3	자체정량평가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
7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8	국세 납입증명서	원본	○	○
9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	○
10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등)	전년도	○	○
		전전년도	○	○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	○
12	타당성조사 참여인력 명단	-	○	○
13	대표 참여인력별 사업 관련 주요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사본	○	○
14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결과, 근거 및 데이터 (Excel)	-		○
15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자료 (위탁용역비, 경비 등 포함)	-		○
16	경제성 분석 산출내역 근거자료 및 결과	-		○
17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사본		○
18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사본	○	○
19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사본	○	○
20	수행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사본	○	○
21	신청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본, 기타 성과물	본타 지원시		○
2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

◆ 제안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해당 증빙자료 명과 필요시 증빙자료 내 관련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투자지원사업)

			접수번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신청기업 정보관리)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업종				
	사무소	주소			
		전화		FAX	
	설치지	대상국명			
		주소			
	수행책임자	전화		FAX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신청정보	국제감축사업명				
	총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총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yr)	
			민간부담금 (천원)		
	사업유형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총사업비/(투자비+운영비) 대비 총 감축량	
예상사업기간		감축실적 이전기간			
<p>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전담기관의 장 귀하</p>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신청기업(주관)	
신청기업(참여)	

20 . .

사업계획 요약

사업명		분야	
신청기업			
지원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협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인증유효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협약기간, 인증유효기간의 경우 국제감축사업 기간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금액 (천원)			(현금)	
			(현물)	
비율 (%)	100		(현금)	민간부담금 기준
			(현물)	

1. 사업 개요

-
-

2.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
-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4. 모니터링 계획

-
-

5.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원 및 적용 기술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실제 사업 위치에 대한 증빙 필요

1.3 사업참여자

구 분	사업자 명	설명
(국내)사업참여자 1		
(국외)사업참여자 2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전화	
담당자 이메일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유치국 정부 관계자, 지원기업, 투자자, SPC 출자 기관/기업 등)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의 세부사항(조직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표 형태로 기술(다수일 경우 표 추가하여 작성)

1.4 사업 시작일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간	

- 사업 시작일은 사업 시행 후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한 날 기술
- 인증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이 발행되는 전체 기간 기술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 해당 사업이 다른 국제 온실가스 감축메커니즘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기술

1.6 사업 추진 단계 및 경과

날짜	항목	관련 문서
2023.00.00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A국 제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 타당성조사 보고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이력 작성
- 해당 사업 현재 추진 단계 및 연도별 추진 경과 상세 기술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포함

1.7 사업대상국 중앙/지역 정부와 논의 경과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 사업 대상국의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 의향서 및 인허가 등

1.8 사업 대상국가 분석

- 사업 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 대상국의 파리협정 양자협력 등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파리협정 하 감축사업추진 가능성 (OECD 국가등급, ODA 중점협력국, 국내기업 사업 추진 여부 등

1.9 추가성

- 사업과 관련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추가성 관련 사항을 기술

1.10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현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방식, 절차, 내용 및 이해관계자 제시 의견 요약 기술(없을시 계획제출)
- (해당할 경우)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

1.11 환경영향

- 대상국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 제시
- 사업 수행에 따른 대상국 및 지역사회의 환경 피해 유발 요인 검토 및 대책 제시

2. 사업 추진계획

2.1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수행내용	세부내용	수행일정(월)												수행기관 및 전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TMOs 협약 체결	·													
2	인허가	·													
3	설치 등 착공	·													
4	시설 운영														
5	국제감측실적 확보	· PDD 작성													
6	· · ·	·													

- 시설 운영 및 국제감측실적 확보를 위한 세부 수행계획 자세하게 기입 필요
- 설치 등 공사 관련 예상 준공 일정, 세부 공사 일정별(토지, 건설, 도로, 계통 연계 등) 공정률 등 자세하게 기입 필요

2.2 국제감측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계획

- 국제감측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등의 역할
- 투입인력 운영 계획(현지 출장 계획, 착공 등)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경력사항

가. 수행 조직

구분	기관명	주요 업무
주관기업		.
참여기업 1		.
참여기업 2		.

나. 수행인력 요약

- 수행인력 : 총 00명(실제 참여자 기준)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업 1 : 00명 / 참여기업 2 : 00명

구분	성명	직급	참여율	주요 업무
주관기업				.
				.
				.
				.
참여기업 1				.
				.
				.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2.3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

- * 본타당성조사에 준하는 내부 검토문서 포함
- ** 본타당성조사 보고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타당성조사 시 기초사된 항목, 주요 결과, 분석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 본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

2.4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설비비, 운영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 및 회계법인 검증 필요 ■ 정부지원금 외 민간부담금에 대한 투자구조 및 자본 조달 계획 상세히 기술 ■ 덧붙임3 참조
--

2.5 주요 수익 및 정부지원금 사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감축실적 외에 추가 수익에 대한 운영 방식 및 비용 사용계획 상세히 기술 ■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 상세히 기술 ■ 덧붙임2 참조
--

2.6 국제감축실적 분배

- 투자지원사업의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
- 투자지원사업의 국제감축실적 분배시 예상 시나리오별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헷지 방안
- 덧붙임4 참조

3.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3.1. 적용방법론

방법론명	
------	--

- 해당 사업에 적용된 방법론명 기술
- 적용 방법론이 국제감축사업협약에서 승인된 방법론임을 기술
- ※ 국제감축협약의 방법론 승인 이전임에 따라 CDM 등 기존 감축메커니즘 방법론 적용

3.2. 방법론 선정 타당성

- 해당 사업이 적용된 방법론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기술
- 해당 사업이 적용된 방법론의 적용 불가조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음을 기술

3.3 사업 경계

- 사업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인 사업의 경계를 기술하고,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감축시설 관련 정보(사진, 시설, 공정도 등) 제시
- 베이스라인 배출원 및 사업활동을 구분하여 제시

배출원		온실가스	포함여부 (O, X)	배출원 설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배출원 1			
	배출원 2			
사업활동	배출원 1			
	배출원 2			

3.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정의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사업의 가장 합리적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술
- 시나리오 선정 절차와 논리 설명

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4.1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4.2 사업배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4.3 누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누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4.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4.5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단 위	
설 명	
출 처	
적 용 값	
측정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 사업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 값을 가지는 인자 제시

4.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앞서 제시된 온실가스 산정식에 인자, 계수를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제시
- 적용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감축량을 하나의 표로 작성

연 도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 ₂ -eq)	사업배출량 (tCO ₂ -eq)	누출량 (tCO ₂ -eq)	감축량 (tCO ₂ -eq)
Year 1				
Year 2				
Year 3				
...				
총 예상감축량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연평균 감축량				

4.7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 사업비에서 예상온실가스 감축량을 나눈 값 제시
- 민감도 분석 이후 예상되는 여러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제시

5. 모니터링 계획

5.1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단 위	
설 명	
출 처	
적 용 값	
모니터링 주기	
측정 방법/절차	
QA/QC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인자 중 인증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변동 데이터 및 인자를 모두 제시하고, 설명
- 모니터링 지점을 보여주는 도식도 삽입

5.1.1 샘플링 계획(해당시)

- 모니터링 인자 중 샘플링 방식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경우 샘플링 방식과 절차에 대해 기술

5.2 모니터링 계획 설명

-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및 관리상 구조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보관 방법, 품질관리 절차 등을 기술
- 모니터링 측정 장비 및 검교정 주기 절차 등에 관한 법령 기술
- 비상계획(Emergency plan) 등에 관한 설명

6.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사업이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번호	항목	확인 사항	해당여부(○/×)	설명
1	정책일관성	사업이 해당 분야, 기술, 지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과 부합하는지 여부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여부		
3	오염 제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수질오염(BOD, COD, pH 등)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		
		전자폐기물, 냉매 등 폐기물 발생 여부		
		소음 및 진동 수준 증가 여부		
		지반침하 유발 여부		
4	안전 보건	지역사회와 사업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		
5	환경 및 생물다양성	사업 지역이 국내법,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인지 여부		
		지역사회의 토지이용과 국내법, 국제 조약,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멸종위기종의 보호 지역 여부		
		외래종 유입 여부		
		자연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음, 진동, 수질, 미세먼지, 배기가스, 폐기물 등)		
		지표수, 지하수, 심층 지하수 사용 여부		
6	경제	현지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지역사회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7	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지역사회 갈등 유발 여부		
		지역 공동체 의견과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포함 여부		
		지역사회의 노동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8	기술	기술 이전,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역량배양 활동 포함 여부		
		설명서, 매뉴얼, 현장 대응 방안 등과 같은 기술 정보 제공 여부 및 운영상 문제점 해소방안 제공 여부(영어 및 현지어)		
		건설, 시공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 계획 여부		

7. 참고 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된 문헌 기술

8.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8.1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최근5년)	자가평가	5건 이상	득점	5
--------------------------------------	-------------	--------------	-----------	----------

순번	국가명	사업명	구분	지원기관	추진현황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사업비 (백만원)
00	000000	00000사업	예비타당성조사	000000	0000-00-00	0000-00-00	00
00	000000	00000사업	본타당성조사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00	000000	00000사업	실시설계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8.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자가평가	B	득점	8
------------------------	-------------	----------	-----------	----------

구분	기업명	평가 등급	평가구분	평가기관	유효기간 (년월일)까지	사업비 배분액 (백만원)	배분비율 (%)
주관	000000	BB-	회사채	0000	0000-00-00	00000	00.0
참여1	000000	A-	기업신용평가	0000	0000-00-00	00000	00.0
참여2	000000	BBB	기업신용평가	0000	0000-00-00	00000	00.0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배분비율을 고려한 최종 평가등급 적용

* [스캔본 첨부] 평가서 등

8.3 지속가능발전 기여	자가평가	4건이상	득점	5
----------------------	-------------	-------------	-----------	----------

구분	정책 일관성	환경영향평가	오염제거	안전보건 등
해당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설명	-	-	-	-

8.4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 여부	자가평가	참여의향, 인허가	득점	10
----------------------------	-------------	------------------	-----------	-----------

년월일	발신처	발신자	파리협정 제6조	인허가 사항
0000-00-00	000부 000국	(이름/직책)	(여/부)	000내 토지사용권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8.5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 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자가평가	있음	득점	5
--	-------------	-----------	-----------	----------

발표년도	목표년도	달성목표		제6조 활용 언급여부	비고
		조건부	무조건		
0000	0000	0000대비 00%	0000대비 000톤	(여/부)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8.6 사업추진단계	자가평가	사업권 확보	득점	8
-------------------	-------------	---------------	-----------	----------

년월일	구분	세부내용	정부 부서(중앙/지방)	종료년월일
0000-00-00	인허가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사업권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구속력 없는 협약 체결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사업제안 요청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권, 인허가 등

8.7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자가평가	투자 확약서	득점	3
-----------------------------	-------------	-------------------	-----------	----------

년월일	구분	사업방식	투자자	투자자별 투자액
0000-00-00	투자확약서	(PPP, 발주, 기타)	000,000,000	0000-00-00

* [스캔본 첨부] 투자자 및 체계 확인이 가능한 도표, 체결된 금융 약정서, 계약서, 투자확약서, 의향서, 기타 등

8.8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자가평가	조건 협약	득점	4
---------------------------------	-------------	------------------	-----------	----------

년월일	주요 매출 및 비용 항목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비고
0000-00-00	0000기 구입	조건 협약	000000	
0000-00-00	0000시설 설치	계약 당사자 파악		

* [스캔본 첨부] 단가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등

8.9 적용기술의 적정성	자가평가	사용권 확보	득점	5
----------------------	-------------	-------------------	-----------	----------

순번	기술명	추진 단계	기술 소유자	비고
000	000000	특허 사용권 확보	000000	
000	000000	특허 사용권 확보	000000	

* [스캔본 첨부] 계약서 등

8.10 국내 및 사업 대상국의 관련 법 준수 여부	자가평가	매우 우수	득점	5
-------------------------------------	-------------	------------------	-----------	----------

국내/국외	관련법령	세부 내용	세부 검토 결과	최종 검토 결과
00	000000			모두 준수
00	000000			
00	000000			

8.11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자가평가	방법론 개정 필요	득점	5
-------------------------	-------------	----------------------	-----------	----------

제도명	방법론명	적용 기술	방법론 적용조건 충족 여부	방법론 개정, 신규방법론 개발 여부
CDM	AM-00000	저탄소 시멘트 사용, 육상 태양광 등	O/X	O/X

* [근거서류 첨부] 방법론의 사업경계, 적용조건등에 대한 충족 여부 증빙 필요

8.12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자가평가	근거 부족	득점	1
------------------	------	----------	----	---

순번	데이터 명	가정값/측정값[단위]	설명	비고
00	이동거리	100km	A-B 직선거리로 가정	방법론 고정 데이터

* [근거서류 첨부] 감축량 산정 엑셀자료 제출 필요

8.13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자가평가	계획 제시	득점	5
-------------------	------	----------	----	---

구분	설명	비고
모니터링 기간	00.00.00~00.00.00	-
모니터링 지점 1	화석연료 1의 사용량을 법적계량기로 계측된 세금계산서값 활용	모니터링 데이터
모니터링 지점 2	연 1회 검교정을 마친 자체 계량기 기록값 활용	모니터링 데이터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현금)		
		(현물)		
100%	%	(현금) %	민간 부담금 기준	%
		(현물) %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인건비	인건비	소계		
직접비	장비 및 재료비	소계		
		계		
	사업활동비	계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소계		
		계		
	위탁사업비	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경제성 분석 및 자원조달 계획

1. 재정지표

재정지표		출처	
비용			
설비투자비	설비구입비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기타		
소계			
수익			
감축사업 수익	발전 등		
	기타		
소계			
기타			
설비수명			
감가상각			
운영비용			
소득세			

2. 민감도 분석

인자	+10% 변동	변동 없음	-10% 변동	벤치마크
투자비				
총수익				
운영비용				

3.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자금조달 계획

※ 경제성분석 양식(안)의 경우 신청 기업의 경제성분석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덧붙임4>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

※ [별표6] 국제감축실적 분배기준 참조

1. 총 사업비 산정

가. 총 사업비 : 원

- 사업비* 세부내역

항 목	사 용 용 도	금액 (백 만 원)
감축설비 투자비**	설비 구입비,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운영비	협약기간 동안의 감축사업 컨설팅비, 행정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시설철거비, 관련 인허가 비용, 부가가치세 등	
사업비용 합계		

* 사업 관련 비용만 산정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 비용은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음

** 감축설비투자비에만 정부지원금 활용 가능

나. 정부지원금(전담기관) : 원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다. 민간부담금(지원기업) : 원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국제감축실적 분배방식 선정

- 분배방식 : 4가지 중 택 1

- 분배방식선정 기준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여부 등

-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기준기간(3년) : 2000.00.00~2000.00.00

-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 원

3.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산정

※ 협약 체결시 기준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 기준으로 재산정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_{2eq}

- 전담기관 분배량 : △△△tCO_{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_{2eq}

나. 연도별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간 : 20 . . . ~ 20 . . . (■ 년간)*

*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기관 분배량의 경우 최대 '31년까지 제출

- 국제감축실적 분배 간격 : 매년

분배연도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q)	예상 국내 분배량 (tCO ₂ eq)	정부 지원금 상환액 (백만원)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원)	전담기관 예상 분배량 (tCO ₂ eq)	국제감축실적 외 사업 수익 (백만원)	보상량* (tCO ₂ eq)
Year1							-
Year2							-
Year3							-
Year4							-
...							-
계							

표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사업

분배연도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q)	예상 국내 분배량 (tCO ₂ eq)	총 정부지원금 비중 (%)	전담기관 예상 분배량 (tCO ₂ eq)	배출권 가치 (백만원)
Year1					
Year2					
Year3					
Year4					
...					
계					

표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불가 사업

- * 모니터링 이후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분배량이 전담기관 분배량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이 타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여 전담기관에게 보상함. 이때 실제 보상량은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함. 단,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함.

<덧붙임5>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해당 증빙자료 파일명 작성)

순번	구분	비고	주관기업	참여기업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1.사업자 등록증	1-2.사업자 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4	국세 납입증명서	원본		
5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6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등)	전년도	사본	
7		전전년도	사본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9	참여인력 명단	-		
10	참여인력별 사업 관련 주요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사본		
11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근거 데이터	-	11. 온실가 스 산정 Sheet	
12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자료 (인건비, 위탁용역비, 경비 등 포함)	-		
13	총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자료	-		
14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사본		
15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보고서 요약본(10페이지 내외) (본타 지원시)	해당시		
1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해당 증빙자료 명과 필요시 증빙자료 내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제5호의1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 평가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1. 사업개요

사업명				
신청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input type="checkbox"/>		본 타당성조사 <input type="checkbox"/>	
대상국명			합계	백만원
신청기업	수행(주관)	타당성조사 사업비	정부지원금	백만원
	참여1		민간부담금	백만원
	참여2			
총 타당성조사 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사업정보	
			예산 사업비	백만원
			연간 예산 운영비	백만원
			연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사항(100점)

평가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정량 평가	신청 기업 적정성 (30)	해외 사업 수행 실적 (5)	1	2	3	4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5)	1	2	3	4	5	
		수행책임자의 경험 (10)	2	4	6	8	1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2	4	6	8	10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10점)	기본협정 체결 및 가서명 여부(10점)	2	6	8	10		
정성 평가	사업화 가능성 (40)	지원기업 사전추진 역량 (10)	2	4	6	8	10	
		사업 추진 가능성 (10)	2	4	6	8	10	
		타당성조사 계획 (10)	2	4	6	8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2	4	6	8	10	
	기대 효과 (20)	온실가스 감축효과 (10)	2	4	6	8	10	
		지속가능발전기여 (10)	2	4	6	8	10	
합계		100						

4. 종합의견

1. 본 사업의 긍정적인 면

2. 본 사업의 부정적인 면(환경영향, 리스크 등)

3. 기타 종합의견

심의위원 : _____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 평가표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1. 사업개요

사업명				
대상국명		신청기업		
총사업기간	20 . 0. 0. ~ 20 . . (개월)	사업비 (백만원)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사항(100점)

평가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사업의 적정성 (30)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5)	1	2	3	4	5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	1	2	3	4	5		
	지속가능발전기여 (5)	1	2	3	4	5		
	사업대상국 확인서 (10)	1		5		10		
	ITMO활용 가능성 (5)	1	2	3	4	5		
사업화 가능성 (30)	사업추진단계 (10)	2	4	6	8	10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5)	1	2	3	4	5		
	수입 안정성 및 비용의 적정성 (5)	1	2	3	4	5		
	적용기술의 적정성 (5)	1	2	3	4	5		
	국내 및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규 준수 (5)	1	2	3	4	5		
감축실적 확보 적정성 (20)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10)	1		5		10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	1	2	3	4	5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	1	2	3	4	5		
사업의 경제성 (20)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10)	2	4	6	8	10		
	총 정부지원금의 회수기간(10)	2	4	6	8	10		
합계		100						

4. 사업비에 대한 의견

	구 분	당해연도 사업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사업비에 대한 의견	1. “항목”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2. “항목”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3. “항목”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4. “항목”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5. “항목”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6. “항목”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사업비	
정부지원금 요청비용			정부 적정 지원금	
종합 의견	총 사업비에 대한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적정 (5% 미만)	<input type="checkbox"/> 다소과다 (5%~20%) <input type="checkbox"/> 과다 (20% 초과)

5. 종합의견

<p>1. 본 사업의 긍정적인 면</p> <p>2. 본 사업의 부정적인 면(환경영향, 리스크 등)</p> <p>3. 기타 종합의견</p>
--

심의위원 : _____ (인)

[별지 제6호의1 서식] 업무협약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담기관(이하 “기관”)과 ** (이하 “지원기업”, 기관 및 지원기업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지원사업명”에 대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원사업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들이 추진·지원하기 위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대상사업)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별첨1”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상지역 : 국가명, 지역명
3.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 : 백만원
4.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금 : 백만원(%)

제4조(협약의 범위와 기간) ① 협약의 범위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지원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지원기업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 대한 협력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기관에 협약 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기관은 본 사업을 지원·관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은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은 제1항의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③ 기관은 기관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부지원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정(계좌)이나 통장으로 사업비를 청구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⑦ 지원기업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지원기업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과 협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하여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 또는 기관의 요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4일 이내에 소명·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관은 정부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 기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① 지원기업은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타당성조사/투자지원사업으로 연계 추진 시 사업 선정 및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기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 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효과 제고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화재, 홍수, 지진 등)
2. 해당 국가 정부의 내란, 쿠데타, 전쟁, 폭동,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외부적 요인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3. 파리협정 및 양 국가 간의 양자협력 정책 등, 인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한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불가
4. 기타 제9조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10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기관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 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국토부장관 또는 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협약기간 중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의 협약 중지 또는 해약과 별도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고의, 과실로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약 이행의 보증) 지원기업은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기관에 납부한다.

제12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기관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관은 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③ 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사업 추진 현황이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기관은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기관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결과
 3.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량, 지속가능발전기여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본 사업 추진 가능성
 6.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양자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또는 협의 결과
 7. 기타 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에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제12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기관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 13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 및 “평가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원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권리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통지) 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 기타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당사자들은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조치) ① 기관은 제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되어 기관가 보완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보고한 경우
6.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포기한 경우
7.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는 집행잔액으로 제한
8.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환수대상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지원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비밀의 유지)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이의 신청) ① 지원기업은 제6조에 따른 정산결과, 제12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16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해당 결과 및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를 우선하며,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③ 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협약서의 “별첨”은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 년 XX 월 XX 일

전담기관

**

0

0

0

대

표

이

사

(주소)

(주소)

※ 협약서 일부 문구는 기관과 지원기업간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

[업무협약서 별첨 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국가 :
3. 사업내용 :
4. 지원기업(사업추진주체) :
5. 협약기간 :
6. 타당성조사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가. 지원규모

-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 : XXX 백만원

항 목	사 용 용 도	금액 (백만원)
경비	협약기간 동안의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총 신청 사업비		

※ 본 사업 예비/본 타당성조사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

나. 정부지원금 : XXX 백만원(협약 후 일시/분할 지급)

-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XX%

다. 민간부담금 :

라. 추진일정(예상 소요기간)

-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1) : YYYY.DD.MM까지
-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2) : YYYY.DD.MM까지
- 그 외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 완료일 기재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의향서

본인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지원금 교부 목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고 운영관리지침 제33조에 의거 추후 본 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본타당성조사지원/투자지원)”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며,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 참여·신청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본 사업이 국토부장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을 인지한다.
2. 본인은 추후 동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본타당성조사지원/투자지원)”으로 추진하며, 정부지원금 교부 후, 동 사업을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참여·신청을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사업 선정 평가에 따름을 인지한다.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지원기업 대표이사 :

수행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전담기관의 장 귀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 사업명 :
2. 지원기업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			
현금 부담금액	금액(현금)	선금(C)	잔금(D)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직인

지원기업 :

직인

수행책임자 :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6호의2 서식] 업무협약서 (투자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서

전담기관(이하 “기관”)과 *(이하 “지원기업”, 기관 및 지원기업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국제감축사업명”에 대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제감축사업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들이 추진·지원하고 국제감축실적을 분배하기 위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첨1”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감축사업은 “별첨2”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상지역 : 국가명, 지역명
3. 총 사업비 :
4.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실적: XX 톤CO₂-eq

제4조(협약의 범위와 기간) ① 협약의 범위는 본 사업을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하여 국제감축실적을 발급 받고 분배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7조에서 규정한 기관이 감축실적을 모두 분배 받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기관에 협약 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기관은 본 사업을 지원·관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 ② 기관은 기관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원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한 감축설비를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정부지원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⑤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정(계좌)이나 통장으로 사업비를 청구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 ⑥ 지원기업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지원기업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기관이 1항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부지원금은 “별첨2”에서 정하기로 한다.

⑩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 또는 기관의 요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관은 정부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감축실적의 발급 및 분배) ① 국제감축실적의 발급 및 분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간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가 구체화 된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내 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3자에 의해 검증받은 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기관에 분배하

여야 하며, 기관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 총량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④ 3항에 따라 기관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은 “별첨3”에서 정하기로 한다.

⑤ 향후 정부지원금이 변동될 경우, 기관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화재, 홍수, 지진 등)
2. 해당 국가 정부의 내란, 쿠데타, 전쟁, 폭동,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외부적 요인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3. 파리협정 및 양 국가 간의 양자협력 정책 등, 인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한 감축실적 발급 불가
4. 기타 제8조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9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기관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 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국토부장관 또는 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9조제1항의 협약 중지 또는 해약과 별도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고의, 과실로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약 이행의 보증) ① 지원기업은 시설의 설치기간 중 “협약의 목적”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선금보증의 형태로 기관에 납부한다.

② 지원기업은 시설의 설치 이후 “협약의 목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제1항의 보증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보험금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기관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③ 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사업 추진 현황이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기관은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기관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6.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7. 기타 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에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제12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기관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권리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통지) 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 기타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당사자들은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① 기관은 제8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포기한 경우
7.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는 집행잔액으로 제한
8.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③ 기관은 환수대상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지원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비밀의 유지)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이의 신청) ① 지원기업은 제6조에 따른 정산결과,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하여, 해당 결과 및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를 우선하며,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③ 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협약서의 “별첨”은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 년 XX 월 XX 일

전담기관

**

0 0 0 대 표 이 사

(주소)

(주소)

※ 협약서 일부 문구는 기관과 지원기업간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

용어 정의

1. “국제감축사업”이란 국토부장관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말한다.
2. “국제감축실적”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으로서,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3. “파리협정”이란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이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한다.
4. “양자협력”이란 파리협정 제6.2조에 근간한 파리협정 하 당사국간의 자발적 참여 기반의 상향식 접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인증유효기간”이란 국제감축실적 발급이 가능한 기간으로 지원기업이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검증”이란 지원기업이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양자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절차 및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발급”이란 지원기업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파리협정 및 양자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받아 국제감축실적이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업무협약서 별첨 2.]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국가 :
3. 사업내용 :
4. 지원기업(사업추진주체) :
5. 협약기간 :
6. **년 국제감축사업 지원기간 :
7. 국제감축사업 전체 설치 및 운영기간 :
8. 사업규모 및 추진일정

가. 사업규모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실적 : XX 톤CO₂-eq.
- 총 사업비 : XX 백만원

항 목	사 용 용 도	금액 (백만원)
감축설비 투자비	설비 구입비,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운영비	협약기간 동안의 감축사업 컨설팅비, 행정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시설철거비, 관련 인허가 비용, 부가가치세 등	
사업비용 합계		

나. 정부지원금(전담기관) : XX 백만원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XX%
- 선금 70% XXX중 지급, 잔금 30% XXX 중 지급

다. 민간부담금(지원기업) : XX 백만원

라. 추진일정(예상 소요기간)

- 각종 인허가 취득일 : YYYY.DD.MM까지
- 감축설비 설치 개시일 : YYYY.DD.MM까지

[업무협약서 별첨 3.] 국제감축실적의 분배

국제감축실적 분배

1. 총 사업비 산정

가. 총 사업비 : 원

- 사업비* 세부내역

항 목	사 용 용 도	금액 (백만원)
감축설비 투자비**	설비 구입비,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운영비	협약기간 동안의 감축사업 컨설팅비, 행정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시설철거비, 관련 인허가 비용, 부가가치세 등	
사업비용 합계		

* 사업 관련 비용만 산정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 비용은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음

** 감축설비투자비에만 정부지원금 활용 가능

나. 정부지원금(전담기관) : 원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다. 민간부담금(지원기업) : 원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국제감축실적 분배방식 선정

- 분배방식 : 4가지 중 택 1

- 분배방식선정 기준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여부 등

-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기준기간(3년) : 2000.00.00~2000.00.00

- 국제감축실적 고시가격 : 원

3.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산정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_{2eq}

- 전담기관 분배량 : △△△tCO_{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_{2eq}

나. 연도별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간 : 20 . . . ~ 20 . . . (□ 년간)*

*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기관 분배량의 경우 최대 '31년까지 제출

- 국제감축실적 분배 간격 : 매년

분배연도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예상 국내 분배량 (tCO _{2eq})	정부 지원금 상환액 (백만원)	국제감축실적 고시기격 (원)	전담기관 예상 분배량 (tCO _{2eq})	국제감축실적 외 사업 수익 (백만원)	보상량 (tCO _{2eq})
Year1							-
Year2							-
Year3							-
Year4							-
...							-
계							

표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사업

분배연도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예상 국내 분배량 (tCO _{2eq})	총 정부지원금 비중 (%)	전담기관 예상 분배량 (tCO _{2eq})	배출권 가치 (백만원)
Year1					
Year2					
Year3					
Year4					
...					
계					

표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불가 사업

* 모니터링 이후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분배량이 전담기관 분배량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이 타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여 전담기관에게 보상함. 이때 실제 보상량은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함. 단,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함.

서 약 서

본인은 국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외에 정부지원금을 임의 집행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유용 또는 총 사업비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중대한 협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일 내에 미제출한 경우
3.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4. 전담기관이 지원기업의 불성실로 국제감축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지원기업 대표이사 : (인 또는 서명)

수행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8호의1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1. 사업명 :

2. 지원기업(수행(주관) 및 참여기업)

기업명	업체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수행(주관)			
참여1			
참여2			

3. 사업개요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 . . . (협약체결일) ~ 20 . . .
-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

구 분	타당성조사(FS)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 액(부담율, %)	원(%)	원(%)	원(%)

5.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액

(단위 : 원)

구분	타당성조사(FS)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교부 요청액	
			수행(주관)	
			참여1	
			참여2	

6. 정부지원금 지급처

(단위 : 원)

기업명	예금주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수행(주관)			
참여1			
참여2			

- 붙임 1. 입금계좌 통장사본,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별지 제8호의3 서식)
 2.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3. 사업자등록증
 4. 지원기업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0 . . .

(수행(주관)기업 대표자) (인)

(참여기업 대표자)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정부지원금(선금, 잔금) 지급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지원기업)

- 주 소 :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3. 설치장소(지원기업)

- 국가명(설치대상국가) :
- 주 소(설치장소) :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4. 사업개요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 . . (협약체결일) ~ 20 . .
- 사업내용 :

5.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 액(부담율, %)			

6.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액 및 기 교부내역

(단위 : 원)

합 계	정부지원금 총액	기 교부액	당회 교부 요청액	교부잔액

7. 정부지원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붙임 1. 입금계좌 통장사본,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별지 제8호의3 서식)
 2. 계약보증보험, 선금보증보험 증권
 3. 사업자등록증
 4. 지원기업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선금사용 계획서
 6. 하도급 계획서 또는 기 지급된 사용액이 있을 경우, 계약서 및 지급증빙

20 . . .

(지원기업 대표자)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덧붙임> 선금사용 계획서

(단위:백만원)

비 목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사용계획 (A)	선금 금액 (B)	기 지급 금액 (C)	정부지원금 잔액 (A-B-C)	
사업비	1. 공사비							
	토목, 건축공사							
		토목						
		부지 정지						
		복토						
		건축						
	기계분야							
		발전기						
		전처리설비						
		배관 및 설치공사						
	전기계측 제어분야							
		수배전반						
		송전선로						
		계측설비						
	2. 설계비							
	3. 감리비							
	4. 기타							
	5. 예비비							
	소계							
	총 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 사업명 : (시행국가, 당초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명 기술)
2. 지원유형 : (예비타당성조사/본타당성조사/투자지원)
3. 지원기업 : (권소사업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 기술)
4. 사업비 : 총 원 (정부지원금 : 원)
 (민간부담금 : 원)
 * 현금 원, 현물 원

전담기관과 지원기업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지원기업 명의의 전용 계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며, 사업비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업비 전용 관리계좌

기관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주관기관	은행 지점		
참여기관	은행 지점		
참여기관	은행 지점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 (인)

첨 부 : 사업비 수령계좌 통장사본(각 사별) 1식.

전담기관의 장 귀하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신청기업(주관)	
신청기업(참여)	

20 . .

사업 중간 성과 요약

사업명		분	야		
		구	분	예타 <input type="checkbox"/>	본타 <input type="checkbox"/>
신청기업					
타당성조사기간	20년 월 ~ 20년 월 (개월)				

구	분	타당성조사(FS) 총 신청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	액	백만원 (현금)	백만원 (현금)	백만원 (현금)
비	율	100%	%	%

기준	예상 사업비	백만원	연간 예상 운영비	백만원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사업기간	년
현재	예상 사업비	백만원	연간 예상 운영비	백만원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사업기간	년

※ 변경 사유 :

1. 사업 개요

○

2. 사업 추진 현황

○

○

3.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및 협의 결과

○

○

(본 '사업성과 요약' 포함 10쪽 이내로 중간보고서 요약본 작성)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원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구분	사업자 명	설명
(국내)사업참여자 1		
(국외)사업참여자 2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

1.4 사업 추진 구조

단계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R&R 및 정보
1. 인허가_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국 환경부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1. 인허가_전력판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국 전력공사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 해당 사업(설치, 운영 인허가, 및 감축실적 승인, 환경영향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별 R&R 설명
- 참여기업 및 투자자, 위탁 용역기업, 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 주체 당사국 정부(시, 중앙정부) 등 각 기관 및 기업 모두 포함 필요

2. 사업 추진 현황

2.1 사업 수행 내용

- 해당 사업을 국제감축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기술하고, 그 중 현재 타당성조사시 수행중인 단계에 대해 설명
(예시, 본타) 기본협정 체결(또는 부처간 MOU)→토지사용 허가→기본계획→법률검토→사업승인서 확보→재무설계→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건축 인허가→기본설계→설계검토→환경영향평가→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PPA 협상→실적분배 협의→분배비율 포함한 약정 체결
- 해당 사업 현재 추진 단계 및 월별 추진 경과 상세 기술

2.2 향후 수행 계획

- 남은 기간동안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상세 기술

2.3 사업 대상국가 분석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환경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하 국가감축목표 등 관련 사항 기술
- 해당 국제감축사업 관련 대상국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예시, 수소차의 경우 수소관련 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에 대해 조사)
-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관세, 노동, 환경, 전력,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관련 법에 대한 내용(규제사항, 의무사항, 관련 절차) 상세히 기술

2.4 기술적 타당성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혹은 설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유사 설비, 유사 기술과 비교 반드시 필요

2.5 온실가스 감축량 및 국제감축실적 확보 가능량

- 산정된 온실가스 감축량과 산정에 활용된 인자에 대한 근거 및 설명 기술
- 해당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관련 법을 통해 예상 국내 분배량 산정
- 국제감축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사업 유형 및 [별표6] 분배 기준에 따른 시나리오 도출

2.6 경제적 타당성

- 총 사업비(직접비, 간접비 등)을 근거자료(견적서 등)와 함께 상세히 기술
- 2.5의 예상 시나리오별 수익, 운영비, 수익성, 원리금 상환 가능성, 민감도 분석, 추정 재무제표 제출

2.7 리스크 분석

- 2.5 시나리오별 예상 리스크와 리스크 헷지방안 기술

(예시, 토지 및 인허가 지연, 공사 완공 지연, 총 사업비 초과 위험, 자원 조달 위험, 수익 하락 위험, 금리 및 물가변동 위험, 환율 변동 위험 등)

2.8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절차와 소요 기관, 담당 부처 등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

2.9 현지 조사 결과

- 현지 조사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

3.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및 협의결과

3.1 사업대상국 중앙/지역 정부와 논의 경과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3.2 국제감축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및 계획

- 대상국의 파리협정 양자협력 등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파리협정 하 감축사업추진 가능성 (OECD 국가등급, ODA 중점협력국, 국내기업 사업 추진 여부 등)

- 중앙/지방정부와 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획

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신청기업(주관)	
신청기업(참여)	

20 . .

사업 중간 성과 요약

사업명		분야	
신청기업			
지원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협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인증유효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금액 (천원)			(현금)	
			(현물)	
비율 (%)	100		(현금)	민간부담금 기준
			(현물)	

구분	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yr)	전담기관 분배량 (tCO _{2eq})	지원기업 분배량 (tCO _{2eq})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원/tCO _{2eq})
내용				

* 총사업비(투자비+운영비) 대비 총 감축량

1. 사업 개요
 -
 -
2. 사업 추진 현황
 -
 -
3. 사업 목표 이행 정도
 -
 -
4. 향후 계획
 -
 -

(본 '사업성과 요약' 포함 10쪽 이내로 중간보고서 요약본 작성)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원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구분	사업자 명	설명
(국내)사업참여자 1		
(국외)사업참여자 2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

1.4 사업 추진 구조

단계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R&R 및 정보
2. 인허가_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국 환경부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2. 인허가_전력판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국 전력공사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 해당 사업(설치, 운영 인허가, 및 감축실적 승인, 환경영향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별 R&R 설명
- 참여기업 및 투자자, 위탁 용역기업, 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 주체 당사국 정부(시, 중앙정부) 등 각 기관 및 기업 모두 포함 필요

2. 사업 추진 현황

2.1 사업 착공 및 운영 수행 내용

- 감축설비 착공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 경과 상세 기술

2.2 국제감축실적 확보 수행 내용

-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수행된 세부 추진 경과 상세 기술
- MRV 구축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된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사업 목표 이행 정도

3.1 기존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해당 투자지원사업 수행시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된 내용 상세히 기술
- 미수행된 내용의 경우, 향후 계획 기술 필요

3.2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 해당 사업이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

4. 향후 계획

4.1 국제감축실적 확보 계획

- [별표6]에 따라 계약 체결한 분배 기준을 준용하여 준공시점, 확보 계획 기술
- 모니터링 계획 내용 포함 필요

4.2 상용운전 및 설비 운영 등 향후 계획

- 시설 정기검진 등을 포함한 연간 상세 일정을 포함한 향후 계획 기술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신청기업(주관)	
신청기업(참여)	

20 . .

사업성과 요약

사업명		분야		
		구분	예타□	본타□
신청기업				
타당성조사기간	20년 월 ~ 20년 월 (개월)			

구분	타당성조사(FS) 총 신청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액	백만원 (현금)	백만원 (현금)	백만원
비율	100%	%	%

사업성과	예상 사업비	백만원	연간 예상 운영비	백만원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사업기간

1. 사업 개요

○

2.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

○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

○

4. 본 사업 추진 가능성

○

○

5.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및 협의결과

○

○

(본 '사업성과 요약' 포함 10쪽 이내로 최종보고서 요약본 작성)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원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구분	사업자 명	설명
(국내)사업참여자 1		
(국외)사업참여자 2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

1.4 사업 추진 구조

단계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R&R 및 정보
1. 인허가		- 유치국 환경부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2. SPC 설립		- 유치국 전력공사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3. 착공.....		-

- 해당 사업(설치, 운영 인허가, 및 감축실적 승인, 환경영향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별 R&R 설명
- 참여기업 및 투자자, 위탁 용역기업, 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 주체 당사국 정부(시, 중앙정부) 등 각 기관 및 기업 모두 포함 필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2.1 사업 수행 내용

- 해당 사업을 국제감축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기술하고, 그 중 현재 타당성조사시 수행중인 단계에 대해 설명
(예시, 본타) 기본협정 체결(또는 부처간 MOU)→토지사용 허가→기본계획→법률검토→사업승인서 확보→재무설계→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건축 인허가→기본설계→설계검토→환경영향평가→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PPA 협상→실적분배 협의→분배비율 포함한 약정 체결
- 해당 사업 현재 추진 단계 및 월별 추진 경과 상세 기술

2.2 사업 대상국가 분석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환경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하 국가감축목표 등 관련 사항 기술
- 해당 국제감축사업 관련 대상국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예시, 수소차의 경우 수소관련 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에 대해 조사)
-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관세, 노동, 환경, 전력,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관련 법에 대한 내용(규제사항, 의무사항, 관련 절차) 상세히 기술

2.3 기술적 타당성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혹은 설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유사 설비, 유사 기술과 비교 반드시 필요

2.4 경제적 타당성

- 총 사업비(직접비, 간접비 등)을 근거자료(견적서 등)와 함께 상세히 기술
- 2.5의 예상 시나리오별 수익, 운영비, 수익성, 원리금 상환 가능성, 민감도 분석, 추정 재무재표 제출

2.5 리스크 분석

- 2.5 시나리오별 예상 리스크와 리스크 헷지방안 기술
(예시, 토지 및 인허가 지연, 공사 완공 지연, 총 사업비 초과 위험, 자원 조달 위험, 수익 하락 위험, 금리 및 물가변동 위험, 환율 변동 위험 등)

2.6 현지 조사 결과

- 현지 조사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3.1 온실가스 감축량

- 산정된 온실가스 감축량과 산정에 활용된 인자에 대한 근거 및 설명 기술

3.2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절차와 소요 기관, 담당 부처 등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

3.1 기존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해당 타당성조사 수행시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된 내용 상세히 기술
- 미수행된 내용의 경우, 향후 계획 기술 필요

3.2 타당성조사에 따른 기타 성과

- (해당시) 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혹은 사업대상국에 기여한 기타 성과 상세히 기술

4. 본 사업 추진 가능성

4.1 경제성 분석에 따른 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4.2 해당 국가의 관련 법, 국제감축실적 확보 관련 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 대상국의 파리협정 양자협력 등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파리협정 하 감축사업추진 가능성 (OECD 국가등급, ODA 중점협력국, 국내기업 사업 추진 여부 등)
- 중앙/지방정부와 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획

5.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및 협의결과

5.1 사업대상국 중앙/지역 정부와 논의 경과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신청기업(주관)	
신청기업(참여)	

20 . .

사업성과 요약

사업명		분야	
신청기업			
지원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협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인증유효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금액 (천원)			(현금)	
			(현물)	
비율 (%)	100		(현금)	민간부담금 기준
			(현물)	

구분	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yr})	전담기관 분배량 (tCO _{2eq.})	지원기업 분배량 (tCO _{2eq.})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원/tCO _{2eq.})
내용				

* 총사업비(투자비+운영비) 대비 총 감축량

1. 사업 개요

-
-

2. 사업 추진 결과

-
-

3. 사업 목표 이행 정도

-
-

4. 사후 관리 계획

-
-

(본 '사업성과 요약' 포함 10쪽 이내로 최종보고서 요약본 작성)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원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구분	사업자 명	설명
(국내)사업참여자 1		
(국외)사업참여자 2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

1.4 사업 추진 구조

단계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R&R 및 정보
3. 인허가_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국 환경부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3. 인허가_전력판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국 전력공사 담당 - 최소 소요기간 : - 주요 절차 : - 참고사항 등

- 해당 사업(설치, 운영 인허가, 및 감축실적 승인, 환경영향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별 R&R 설명
- 참여기업 및 투자자, 위탁 용역기업, 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 주체 당사국 정부(시, 중앙정부) 등 각 기관 및 기업 모두 포함 필요

2. 사업 추진 결과

2.1 사업 착공 및 운영 수행 내용

- 감축설비 착공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 경과 상세 기술

2.2 국제감축실적 확보 수행 내용

-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수행된 세부 추진 경과 상세 기술
- MRV 구축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된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사업 목표 이행 정도

3.1 기존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해당 투자지원사업 수행시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된 내용 상세히 기술
- 미수행된 내용의 경우, 향후 계획 기술 필요

3.2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 해당 사업이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술

4. 사후 관리 계획

4.1 국제감축실적 확보 계획

- [별표6]에 따라 계약 체결한 분배 기준을 준용하여 준공시점, 확보 계획 기술
- 모니터링 계획 내용 포함 필요

4.2 상용운전 및 설비 운영 등 향후 계획

- 시설 정기검진 등을 포함한 연간 상세 일정을 포함한 향후 계획 기술

[별지 제11호의1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년 월)		
사업비(천원)	계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p>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사업비 사용 실적을 제출합니다.</p> <p>첨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해당 시) 4. 협업사업 집행내역서 및 증빙자료(해당 시) 5. 기타 구비서류(해당 시)</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행책임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기업의 장 <input type="text" value="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담기관의 장 귀하</p>			

210mm × 297mm

1. 사업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항목	세목	구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정부 지원금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					
민간 부담금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					
		소계					
총사업비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정부지원금

- 경비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민간부담금

- 경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20 ~ 20 (년 월)		
사업비	총계 (정부 : 원, 민간 : 원)	원	
이자 산출기간	20 ~ 20		
사용잔액	원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원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B)	원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원
총 이자액(B+C)	원	발생이자 사용금액(D)	원
발생이자 사용내역			
미사용이자(B+C-D)	원	미사용이자 중 정부지원금 지분(E)	원
총 반납액(A+E)	원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 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총)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frac{\text{(총)정부지원금}}{\text{(총)정부지원금} + \text{(총)민간부담분}}$			
작성자 :			(인)

4. (자체) 회계의견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년 월)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지원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민간부담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당해연도 사업비	원				이체일 :
					근거번호 :

나. 발생이자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원	원	이체일 :
			근거번호 :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경비 · 국내여비 ...				
위탁사업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국제감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원기업의 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전담기관의 장 귀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년 월)				
사업비(천원)	계				
	정 부 지원금		민 간 부담금		
<p>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사업비 사용 실적을 제출합니다.</p> <p>첨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해당 시) 4. 협업사업 집행내역서 및 증빙자료(해당 시) 5. 기타 구비서류(해당 시)</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수행책임자 지원기업의 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인)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 type="text" value="직인"/>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전담기관의 장 귀하</p>					

210mm × 297mm

1. 사업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항목	세목	구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정부 지원금	감축설비 투자비 (위탁사업비 포함)	설비 구입비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등 기자재 포함)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부가가치세 등					
정부/ 민간 부담금	운영비 (위탁사업비 포함)	감축사업 건설팅					
		행정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위탁사업비 포함)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시설철거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포함)					
		관련 인허가 비용					
		부가가치세 등					
	소계						
총사업비							

※ 토지구입비, 시설철거비 등의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정부지원금

(1) 감축설비 투자비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나.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 (1) 운영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2) 기타 비용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20 ~ 20 (년 월)		
사업비	총계 원 (정부 : 원, 민간 : 원)		
이자 산출기간	20 ~ 20		
사용잔액	원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원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B)	원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원
총 이자액(B+C)	원	발생이자 사용금액(D)	원
발생이자 사용내역			
미사용이자(B+C-D)	원	미사용이자 중 정부지원금 지분(E)	원
총 반납액(A+E)	원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 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총)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지원금 + (총)민간부담분 작 성 자 : (인)			

4. (자체) 회계의견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년 월)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지원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민간부담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당해연도 사업비	원				이체일 :
					근거번호 :

나. 발생이자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원	원	이체일 :
			근거번호 :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감축설비 투자비 · 설비 구입비 · 공사비 ... 운영비 · 운영인력 인건비 ... 기타 비용 · 토지구입비 ... 위탁사업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국제감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원기업의 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2호의1 서식] 착수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1. 지원업체명:
2. 국제감축사업명:
3. 대상국:
4. 타당성조사(FS) 총 사업비:
5. 타당성조사 정부지원금:
6. 타당성조사·설계·컨설팅 업체:(필요시)
7. 착수연월일:
8. 조사 완료 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직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1. [별지 제4호의1 서식] 사업계획서 (덧붙임 내용과 증빙자료 포함)
2.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3.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재직·경력·자격 증명서류
4. 보증보험증권

전담기관의 장 귀하

※ 보증보험증권 세부사항

○ 예비 타당성조사 : 지급(이행)보증증권

- 정부지원금 전액, 조사 완료 예정연월일에 3개월 추가한 기간으로 발급

[별지 제12호의2 서식] 착수신고서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1. 지원업체명:
2. 국제감축사업명:
3. 대상국:
4. 총 사업비:
5. 설계·시공·컨설팅 업체:(필요시)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직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1. [별지 제4호의2 서식] 사업계획서 (덧붙임 내용과 증빙자료 포함)
2.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3. 선행 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증빙자료
4. 보증보험증권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6. 대상국 정부 사업 참여 의향서 등

전담기관의 장 귀하

※ 보증보험증권 세부사항

○ 투자지원사업 : 계약보증증권

-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준용, 정부지원금의 10% (특례 적용기간은 5%)

[별지 제13호의1 서식] 완료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완료 신고서

1. 지원업체명:
2. 국제감축사업명:
3. 대상국:
4. 총 사업비:
5. 정부지원금:
5. 설계·시공·컨설팅 업체:(필요시)
6. 착수연월일:
7. 조사 완료 연월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직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법인 등록 번호	
	기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업 종				
	본사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대상국명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변경사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선택	타당성조사 지원			투자지원
	<input type="checkbox"/>	타당성조사계 획(조사항목 등) 변경	사업계획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집행계획	설치설비 내역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	사업기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사 항	사업비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사항			
<p>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전담기관의 장 귀하</p>					

1

변경사유

변경내용 상세

변경이유

변경이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부서류	비고
타당성조사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사계획 변경 관련 서류	
사업기간 변경	<input type="checkbox"/> 조사기간 변경 <input type="checkbox"/> 조사 지연 확인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업체별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집행관련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서류	
기타 변경사항	<input type="checkbox"/> 기타 증빙서류	

□ (투자지원사업)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부서류	비고
사업계획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서류	
설치설비내역	<input type="checkbox"/>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사업기간 변경	<input type="checkbox"/> 공사기간 및 인허가 기간 변경 <input type="checkbox"/> 선하증권(선적확인증), 적하증권, 선적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input type="checkbox"/> 제작요청서(공장발주서) <input type="checkbox"/> 제작 지연 확인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업체별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집행관련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서류	
기타 변경사항	<input type="checkbox"/>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 포기각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포기각서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합계			
참여기업		대표자	
<p>지원기업인 _____은(는) 상기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며,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기업 대표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행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담기관의 장 귀하</p>			

※ 지원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6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지원기업명 :

2. 설치 현황

국제감축사업 진행상황	
----------------	--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지급결정액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사업진행 특이사항	
--------------	--

첨부 1. 공정표

2. 국제감축사업 진행상황 사진/조사 보고서

20 년 월 일

지원기업

(서명 또는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사고 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지원기업명 (사업장명)				
사 무 소	주 소			
	전 화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p>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담기관의 장 귀하</p>				

[별지 제18호의1 서식] 최종평가서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사업비		협약기간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평가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사업의 적정성 (70)	사업 기초조사(15)	3	6	9	12	15	
	기술적 타당성(20)	4	8	12	16	20	
	경제적 타당성(20)	4	8	12	16	20	
	리스크 분석(15)	3	6	9	12	15	
국제감축 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	사업 추진의 준비성(15)	3	6	9	12	15	
	사업비 집행 타당성(10)	2	4	6	8	10	
	지속가능발전 기여(5)	1	2	3	4	5	
가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0		5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등 포함	0		5			
합 계		100 (+10)					

20 . . .

심의회원 : _____ (인)

[별지 제18호의2 서식] 최종평가서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사업비		협약기간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평가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사업의 적정성 (70)	타당성조사의 적정성(15)	3	6	9	12	15	
	투자지원사업을 위한 설계 등 진전도(30)	6	12	18	24	30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계획(25)	9	13	17	21	25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	사업 추진의 준비성(15)	3	6	9	12	15	
	사업비 집행 타당성(10)	2	4	6	8	10	
	지속가능발전 기여(5)	1	2	3	4	5	
가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0		5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등 포함	0		5			
합계		100 (+10)					

20 . . .

심의회원 : _____ (인)

[별지 제18호의3 서식] 최종평가서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국제감축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사업비		협약기간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평가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평가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사업성과 (50)	감축설비 설치·운영 적절성 (20)	4	8	12	16	20	
	목표 달성 정도 (30)	6	12	18	24	30	
노력도 (25)	사업비 집행 적정성(15)	3	6	9	12	15	
	추진방법 및 과정 적극성(10)	2	4	6	8	10	
사후관리 (25)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계획(20)	4	8	12	16	20	
	사업대상국 지속가능발전기여(5)	1	2	3	4	5	
합 계		100					

20 . . .

심의회원 : _____ (인)

[별지 제21호 서식]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1. 외부 위탁의 필요성

2. 위탁용역 기관 선정사유 및 활용계획

3. 위탁용역 기관 정보

1) 일반현황

- 기관명 :

- 주소

- 전화

- 홈페이지

- 참여인력

2) 위탁용역 기관의 역량 및 경험, 감축사업 관련 실적

3) 참여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4. 위탁용역 과업 내용

(첨부자료)

붙임1. 계약서 초안

붙임2. 실적 증빙자료

붙임3. 경력 증빙자료

붙임4. 견적서 (국내기관의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세부 목차 등 추가 가능